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정책 주요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 50조 제 3항 3호에 따라 하나은행의 내부통제기준 중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주요 정책

1. 신의 성실 의무 및 고객이익 우선

하나은행은 고객이익을 우선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은행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선관직무 및 충실의무

하나은행은 은행 이용자 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해당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직무관련 정보 이용 금지

하나은행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4. 임직원의 이해상충 차단

하나은행은 임직원이 은행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은행이나 고객을 상대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하나은행은 임직원이 은행과 은행이용자간 또는 특정 은행이용자와 다른 은행이용자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임직원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은행 이용자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은행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은행과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종목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6. 정보교류 차단 체계 구축

하나은행은 관계법령 등에서 이해상충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정한 은행의 업무에 대하여 그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정보교류 차단 체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보교류차단 부문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 ① “고유재산운용업무”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은행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소유하는 업무로서 투자매매업이나 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가 아닌 업무를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 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기 사채 등
 - 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다. 환매조건부매매로 매수 또는 매도한 증권
 - 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회사의 주식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
 -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 (3) 은행이 (1) 또는 (2)에 해당하는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 마. 거래소, 예탁결제원, 전자등록기관(「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 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
 - 바. 소송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 등 경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거래로서 당해 거래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없다고 금융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아서 거래하는 금융투자상품
 - 사. 그 밖에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금융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아서 거래하는 금융투자상품
- ② “신탁업”으로 자본시장법 제6조 제9항의 신탁업 중 신탁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 및 집합투자 재산·신탁재산 중 금융투자상품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만을 말한다.
- ③ “기업금융업무”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가. 인수업무
 - 나.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 다.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 라.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조언업무
 - 마.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수주(受注)한 기업을 위하여 사업화 단계부터 특수목적기구(특정 프로젝트를 사업으로 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주 등에게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그 밖의 기구를 말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출자, 그 밖의 자금지원(이하 이 항에서 “프로젝트금융”이라 한다.)을 하는 자금조달구조를 수립하는 등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금융에 관한 자문업무
 - 바. 프로젝트금융을 제공하려는 금융기관 등을 모아 일시적인 단체를 구성하고 자금지원 조건을 협의하는 등 해당 금융기관 등을 위한 프로젝트금융의 주선업무
 - 사. 마목에 따른 자문업무 또는 바목에 따른 주선업무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프로젝트금융
 - 아.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자본시장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④ “판매업무 등”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중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그 밖에 고객의 재산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의 업무를 말한다.

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1조 제1항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 업무

나.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위한 투자중개업

2.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 ①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 ②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③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1.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 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

2.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은행이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중 1개월이 지난 정보
-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

■ 미공개중요정보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하나은행은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준법감시인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거래제한 대상목록

① 은행은 은행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의 권유, 은행의 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관련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이하 “매매거래 등”이라 한다)을 제한하는 대상을 목록으로 지정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단, 거래제한대상을 지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은행이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주권(주권관련 사채권을 포함한다)의 인수업무 및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당해 업무의 규모 및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제한 대상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 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사회통념상 은행이 매매거래 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임직원은 매매거래 등에 임하기 전에 거래제한 대상목록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거래주의 대상목록

① 은행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지정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거래 상대방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 등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은행과 고객간 또는 특정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가. 「거래제한 대상목록」 ① 가목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또는 잠재고객이 해당 업무를 은행에 위탁할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은행에 의뢰한 경우 및 은행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상대방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

나. 기타 매매거래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은행 및 임직원은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지정된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거래를 권유할 경우 그 이해관계를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업무 수행 사실이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아니하고 이해관계를 고지함으로써 계약위반 또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 방안

【이해상충우려 및 정보교류차단이 필요한 업무영역】

1. 고유재산운용업무 등의 정보교류 차단

❶ 고유재산운용업무와 관련한 다음의 업무 영역간에는 아래의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에 대한 대응 방안」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가. 고유재산운용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탁업(신탁재산을 금융투자 상품에 운용하는 업무 및 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 중 금융투자 상품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의 경우

나. 판매업무 등과 다른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및 고유재산운용업무 간의 경우

다.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과 판매업무 등을 제외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및 고유재산운용업무 간의 경우

라. 신탁업자가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및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및 신탁업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업무와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으로서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업무 간의 경우

❷ 상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에 대한 대응 방안」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가.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중 기업금융업무와 집합투자업중 기업금융업무간의 경우

나. 고유재산운용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중 전담중개업무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의 투자자 재산을 전담중개업무로서 보관·관리하는 신탁업 간의 경우

다. 판매업무 등과 신탁업 간의 경우

2. 기업금융업무 등의 정보교류차단

❶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 간의 경우 에는 아래의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에 대한 대응 방안」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❷ 상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에 대한 대응 방안」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기업금융업무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간의 경우

가. 주권비상장법인(자본시장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주권의 상장에 비 심사를 청구하여 거래소로부터 그 주권이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주권비상장 법인인 제외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에 출자,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 위험관리 목적의 파생상품거래 등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

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증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전문가간에만 거래되는 「증권으로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채무증권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어음증권(자본시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을 말한다)에 대한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다. 자본시장법 제393조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장중 대량매매 또는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하는 주식의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라. 인수업무 또는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기업이 발행한 인수권 증서를 매매하거나 이를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 마.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제249조의7 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출자하는 업무
 - 바. 그 밖의 기업금융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코넥스시장(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법인에 출자하는 업무. 다만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라 자신과 지정자문 계약을 체결한 코넥스시장 상장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 인수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증권을 매도하거나 모집·사모·매출의 주선과정에서 그 증권을 취득시키는 업무
- 2) 기업금융업무중 프로젝트금융 주선업무 또는 프로젝트금융의 자문 업무 또는 주선업무에 수반하는 프로젝트금융 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 간의 경우
 - 3) 기업금융업무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기사채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무증권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대한 인수업무 또는 모집·매출·사모의 주선업무와 금융투자업 간의 경우

3. 계열회사등과의 사외정보교류시 금지행위

은행은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를 포함한 제3자(이하 “계열회사 등”이라 한다)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 가. 계열회사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 나. 제공하는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 다.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미리 받을 것
 - 라.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관리할 것
 - 마. 정보를 제공받은 계열회사가 해당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 바.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
- ② 임원(이사, 감사를 말하며, 비상근감사를 제외한다) 또는 직원을 겸직하게 하거나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하게 하거나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가.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이 집합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의 비상근 임직원이 집합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 나.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가 그 임직원을 집합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집합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로부터 그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 다.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상근 임직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비상근 임직원이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 ③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 가. 계열회사와 함께 투자자, 그 밖의 고객과 대면하여 안내·상담·투자권유·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공간을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 나. 가목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 ④ 임직원이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금융투자업의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 은행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에 대한 대응 방안]

은행은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업무 영역 간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 나. 제공하는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 다.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미리 받을 것
 - 라.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관리할 것
 - 마.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 바.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
- ② 임원(이사, 감사를 말하며, 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제외 한다) 또는 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
- ③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다음 각의 방법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 가. 사무공간이 벽이나 칸막이 등을 통하여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거나 출입문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법
 - 나. 전산자료가 공유되지 못하도록 독립되어 열람되지 아니하는 방법
- ④ 그 밖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업무 간에 담당부서를 독립 부서로 구분하지 아니하거나 담당 부서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간에 해당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에 은행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